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118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

담당변호사 고혜련, 신양선, 이승현, 임현진, 한선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오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종윤

변 론 종 결 2021. 6. 29.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사이에 공증인 D이 2019. 9. 2. 작성한 증서 2019년 제29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2019. 9. 2.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78,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차172, 확정일 2019. 7. 3., 갑 제1호증).

나. 2019. 9. 2.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을 제2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타채1376, 갑 제3호증, 이하 위 압류·전부명령을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채무변제계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채무자 회사는 2019. 7. 12.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카합2037, 을 제9호증), 법원은 2019. 7. 25. 25,000,000원의 현금 담보를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으나(을 제10호증), 채무자 회사는 담보를 공탁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9. 8. 12. 위 가처분신청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을 제11호증).

이후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현금 담보 상당액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의 기존 채무 100,000,000원에 관하여(새로 발생한 25,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아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2019. 9. 2.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을 제2호증), 채무자 회사는 2019. 9. 3. 다시 동일한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을 제4호증의 1, 2), 법원은 2019. 9. 4. 앞서와 같이 25,000,000원의 현금 담보를 명하였고(을 제4호증의 3), 피고가 2019. 9. 5. 위 25,000,000원을 대신 공탁하였으며(을 제5호증), 법원은 2019. 9. 9.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을 제6호증의 1, 2). 피고는 2019. 9. 1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갑 제3호증).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채무자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는 책임재산은 피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가 압류·전부명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재산인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참조),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볼 때에는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참조).

다만 피고는 새로운 2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대신 기존에 이미 발생한 100,000,000원의 채권으로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운 25,000,000원의 채권에 기하여 별도로 채무자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전체적으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액 중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의 대상은 피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공탁된 2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액 중 2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을 통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따라서 위 초과액에 관한 부분 역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허윤범